

(앞쪽)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구인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조기채취업 수당 지급결정사항		산출명세						
			지급액						
	미지급 사유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공지사항

1.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④ ~ ⑩란은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재취직한 사업장의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3. ⑪ ~ ⑯란은 청구인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그 사업(장)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4. ⑦란은 실제 근로시작일을 적습니다.
5. ⑧란은 취직 사업장에 고용되기 이전에 취직이 확정되었음을 유선, 서면 등으로 통보받은 날을 적습니다.
6. ⑨란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직전에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이름을 적고 ⑩란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인이 취직한 사업장과 ⑨란에 작성한 사업장의 관계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합니다.
7. ⑭란은 실제 사업을 개시한 "개업연월일"을 적습니다.
※ 자영업의 경우 직전 구직급여 수급 중에 해당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았던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8.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급여명세서(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의 경우)

처리절차

